

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의안 번호	26-67
----------	-------

제의년월일: 2026. 7.

제 의 자: 마포구의회 의장

1. 주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라 「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7 명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9일까지로 하되,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2. 제의이유

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마포구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, 마포구 행정기구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마포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」 제7조